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1. 이헌승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5. 4.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9.18.)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헌승의원)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

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1) 보호감호소 및 치료감호소 명칭 현행화(안 제4조제2항제5호)

가. 개정안 요지

○ 특수도서관 중 교정시설도서관을 교도소·국립법무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여 ‘보호감호소’ 명칭을 삭제하고, ‘치료

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현행화함(안 제4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교도소·<u>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u>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국립법무병원</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제2항[1]은 도서관을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

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특수도서관 중 교정시설도서관은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교정시설도서관의 정의에서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 역시 변경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률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보호감호소는 종전의 「사회보호법」[2]에 따라 보호감호 선고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2) **舊 「사회보호법(2005년 폐지)」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시설로, 보호감호 처분이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3]됨에 따라 보호감호소 역시 폐지되었음.

- 치료감호소는 2022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4]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호감호소'는 위헌 소지로 인해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사라진 시설이므로 「도서관법」에서 해당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보호감호소'를 교정시설도서관의 정의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동법 개정안[5]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3)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폐지이유**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법률 제18678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이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2024.12.20.), 의안번호 제2206799호

(2)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직무계속 규정 신설(안 제12조제8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임기가 만료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신 설> ⑧ (생 략)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도서관법」 제11조[6]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6)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2조[7]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됨.

- 현재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4년 4월에 출범한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

○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촉 위원은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함.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서관법」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8]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임.

○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개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임기 만료 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9], 4차산업혁명위원회[10], 농어

---

8)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9)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1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업·농어촌특별위원회[11], 최저임금위원회[12]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백을 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현행화(안 제23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안 제23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출판업체 또는----------

한다.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도서관법」 제23조[13]는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제작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음.

○ 국제표준자료번호란 전세계 각종 출판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출판물을 간단히 식별 처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로, 도서에 부여되는 13자리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연속간행물에 부여되는 8자리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으로 구분됨.

○ 개정안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에는 출판사 신고가 필요적으로 수반되도록 운영[14]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제도의 운영에 맞게 법률을

13)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재 부여되고 있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구성에는 '출판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신청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15]에 따라 출판사 신고를 하고 발행자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가능함.

-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시에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 신고·등록

---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및 판권지)
 나. 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없이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신청이 불가능함.

○ 다만, **한국도서관협회**는 현행 유지 필요 의견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한국서지표준센터에 발행자번호를 신청할 시에 출판사(개인, 법인) 등록이 있어야 하는 절차가 이미 별도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개인과 단체의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인에게 부여할 수 없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신청자에서 개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가. 개정안 요지

○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도서관법」 제51조[16]는 동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문체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16)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 · 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 · 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도서관협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개정의 취지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확하게 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임오경 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사항

없 음